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1.

발의자 : 김영진 · 안호영 · 염태영
조승래 · 권칠승 · 안태준
윤후덕 · 소병훈 · 유동수
김한규 · 송기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대주(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)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5조의2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요건, 공제율 등은 제1항 본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2의 개정규정

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2항”을

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
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의 경우에는 100분의 17]에 해당
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
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
한다. 다만, 해당 월세액이 1천
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
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〈신 설〉

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요건, 공제율 등은 제1항 본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 한다.	----- -----.
③ <u>제1항</u> 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④ <u>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.